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01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서영교・이해식・황정아

김용만 • 위성곤 • 한민수

복기왕 · 강준현 · 임오경

조인철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 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금속화재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금속화재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1. 배터리(리튬이차전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 의 소유자
 - 2. 배터리 제조 공장 및 보관 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
 - 3. 그 밖에 리튬, 나트륨, 칼륨 등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의 제조 공장 및 보관 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
 - ② 제1항에 따른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

다.

④ 소방청장은 제18조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속화재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및 보관시설 등을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속화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금속화재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배터리 화재 발생 에 대비한 소화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금속화재 소방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배터리(리튬이차전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를 제작
	·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2. 배터리 제조 공장 및 보관시설 소유 또는 운영자3. 그 밖에 리튬, 나트륨, 칼륨
	등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의 제조 공장 및 보관 시 설 소유 또는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금속화재 소 방시설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금속화재 소방시설 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 인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8조의 중앙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화재 소방시설의 화 재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